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


창 원 시 의 회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
의안 번호	69
----------	----

제의연월일 : 2026. 9. 1.

제 의 자 : 의 장

1. 제의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, 「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,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명 칭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
- 구성목적
 -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심사
 -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
- 구성인원 : 9명(의회운영위원회 1명, 타 상임위원회 각 2명)
- 활동기간 :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3. 관계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, 제71조
- 「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, 제8조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(안)

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,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명 칭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
2. 구성인원 : 9명
3. 위원명단 (가나다순)

위 원 회 명	성 명
의회운영위원회	박영주
기획행정위원회	남재욱, 서명일
산업경제복지위원회	문순규, 심임숙
문화환경도시위원회	김원일, 박찬열
건설해양농림위원회	김우진, 하경석

※ 임시 위원장 : 문순규 의원 (최다선 의원)

4. 활동기간 :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(互選)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 이 경우 선출된 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